

교무위원회규정

공포 제2025-10호(개정 2026. 1. 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무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사항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술정보관장, 평생교육원장, 교수회 평의회 추천 1인, 직원총회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운영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6.)
3. 학과 및 학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6.)
4.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6.)
5. <삭제 2026.1.6.>
6. <삭제 2026.1.6.>
7. <삭제 2026.1.6.>
8. 각종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6.1.6.>
11.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소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 (개정 2024.4.18.)

제7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무처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